◈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등급 변경, 수가 변경, 월한도액 변경, 본인부담금 자격변동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월이용료

월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3)「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5) 급여제공범위 안내 요구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7) 급여비용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